

**41**

## 기회발전특구 등의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(규칙 §8, §8의2)

### □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업종)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제조업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장 범위 재설계 및 명확화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업종)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모든 제조업 +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

### □ 개정내용

- (현황) 과밀억제권 공장 지방 이전(법 §80), 기회발전특구로 공장 이전 또는 특구 内 공장 신·증설(법 §80의2) 시 지방세 감면 中
  - 공장의 범위, 업종\*,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위임

\*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표2의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 대상 제조업 인용
- (개선) 업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로 명확화

### □ 적용요령

- 이 규칙 시행(2026.1.1.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- 제조업과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옥외 기계장치 및 저장·공급시설(석유·석탄·가스·증기·냉방공기 등 저장·공급 시설) 포함
 

※ 기회발전특구 内 가스 제조·공급업, 증기 및 냉방공기 공급업 등으로 이용되는 LNG 저장시설은 감면 대상에 해당(ex: 울산 남구, 충남 서산, 전남 여수 등)